

영등포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5.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19호로 2012년 4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2010.9.17), 「소음·진동관리법」 개정(2009.6.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2010.6.8), 「비료관리법」 개정(2011.7.14) 등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제2호 중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62종)”을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71종)”으로 하고 나목 7)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액을 “3,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 조정하고,

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록,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주유소) 등록,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 비료생  
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 관련 수수료를 신설함.

#### 4. 참고사항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53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
-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일부 개정되고 2009년 6월 9일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2010년 6월 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2011년 7월 14일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수수료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제2호 나목의 7)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의 수수료액이 종전 “3,0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적용한 것임.

- 안 별표 제2호 아목, 자목, 차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는바 이는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제5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임.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1건	10,000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1건	5,000원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50,000원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30,000원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록	1건	15,000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50,000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	1건	30,000원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비료수입업 신고	1건	10,000원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의 위임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액 등을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한 사항으로 개정·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 참 고 자 료

1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류	금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2

## 소음·진동관리법

제53조(수수료)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9.6.9>

###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수수료) ①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8>

### 3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7.14>

④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⑤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7.14>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전문개정 2011.7.14]